

직원 행동 요령

1. 시험업무 계약책임자는 사전에 고객과 일정 협의 및 시험 준비 등에 대해 협의하며 고객요구 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실무자는 시험활동과 고객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신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실무자 신분증을 패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3. 시험실무자는 시험대상 품목의 제조, 설치, 사용자, 판매자 유지, 관리 등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4. 시험실무자는 규정된 절차 및 시험방법에 따라 공평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원 및 시험실무자는 기술책임자 등 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시험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임의의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7. 시험실무자는 기술적인 절차 또는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원시데이터(raw data)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 시험실무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 당사에서 규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